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942호)

2026. 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현 중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오염우려물품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삼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7. 14.

3. 회 부 일 : 2026. 7.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축전염병의 발생 양상이 다양화되면서 사람, 차량 및 가축사육시설뿐만 아니라 사료 등을 통한 병원체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사료는 생산·유통 과정에서 다수의 농가에 동시 공급되는 특성이 있어, 병원체에 오염될 경우 단기간 내 광범위한 지역으로 전파될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은 이러한 물품에 대한 명확한 관리방식이나 행정조치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아니함.

이에 가축방역관이 가축전염병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결과 등이 있으면 사료제조시설 등 축산관계시설에서 사료를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가축질병의 예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試料)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3호).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사료 등 오염우려물품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제3항에 따라 채취한 사료에 대한 병원체 검사를 「사료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사료검사로 보도록 하며, 관련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방역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신설 및 제58조제3호).

Ⅲ. 검토의견

1. 오염우려물품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개정안은 가축방역관의 시료채취 대상 축산관계시설에 사료 제조시설을 포함하고, 오염우려물품에 대한 사용중지 등 조치 명령의 근거를 신설하며, 관련 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임(안 제7조 등).

최근 가축전염병 발생 양상이 다양화되면서 사람, 차량 및 가축사육시설뿐만 아니라 사료 등을 통한 병원체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2026년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24건에 대한 역학조사 중간결과에서도 오염된 사료(원료)의 생산·공급 경로를 통한 유입 가능성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된 바 있음.

그런데 사료는 생산·유통 과정에서 다수의 농가에 동시 공급되는 특성이 있어 병원체에 오염될 경우 단기간 내 광범위한 지역으로 전파될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사료 등 오염우려물품에 대한 명확한 관리방식이나 행정조치의 근거가 충분하지 아니한 문제가 있음.

이러한 점에서 사료를 매개로 한 가축전염병 확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관리 체계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첫째, 오염우려물품에 대한 사용중지 등 조치 발동 요건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함.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오염우려물품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발동 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¹⁾에 따르면 오염우려물품은 사료·조사료, 동물약품, 가축사육시설 바닥재료, 원유·식용란 등 가축의 생산물 등 9개 유형에 해당하여 그 범위가 광범위함.

-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사람과 차량 등의 소유자는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동 승인신청을 받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1.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나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가까이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 또는 해당 가축의 사육장소에 함께 있어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오염우려물품”이라 한다)을 격리·역류하거나 해당 가축사육시설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오염우려물품)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우려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사료·조사료 2. 동물약품 3. 가축사육시설에서 바닥재료로 사용되는 깔짚, 왕겨 등 4. 액상 및 고형 분뇨 5. 축산 도구 및 기자재 6. 신발·작업복·장갑·모자 등 7. 원유·식용란 등 가축의 생산물 8. 남은 음식물 9. 그 밖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개정안에 따른 사용 중지 등 조치는 오염우려물품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오염 개연성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일괄적인 사용 중지가 내려질 경우 오염우려물품 중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은 동물약품, 원유 등은 단기간의 사용 중지만으로도 사실상 전량 폐기가 불가피해지는 등 피해가 상당할 수 있음.

이처럼 사용 중지 등 조치는 대상 물품의 특성에 따라 농가·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음에도, 개정안은 사용 중지 등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문언만으로는 오염이 실제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는 것인지, 오염이 의심되는 정황만으로도 가능한 것인지, 나아가 특정 시설·지역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기만 하면 실제로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없는 주변 물품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가 불분명한 상황임.

이처럼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처분임에도 그 발동 시점과 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 집행이나 과도한 조치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하위법령을 통하여 발동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이 인용하는 오염우려물품의 정의가 향후 시행

예정인 개정법률에 따라 축소되어 개정안의 실효 범위가 좁아질 우려가 있음.

현재 공포 후 시행 전인 「가축전염병 예방법」(법률 제21504호)은 가축폐기물처리업 정의를 신설하면서 오염우려물품을 약칭하는 조항의 위치를 기존 제19조에서 제2조로 변경하였음.

그런데 약칭 조항의 위치가 변경되면서 기존에는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이나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가까워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사육장소에 함께 있어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이 오염우려물품에 해당하였으나, 개정법률(법률 제21504호)에 따르면 "살처분한 가축"의 사육장소에 함께 있어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이 오염우려물품에 해당하게 되어 오염우려물품의 범위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음.

【 오염우려물품 약칭 비교 】

현행법률 (법률 제20998호) (신 설)	공포 후 시행 전 법률 (법률 제21504호)
	제2조(정의) 10. “가축폐기물처리업”이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살처분을 명한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가.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는 업무 나. 살처분한 가축의 사체 등[해당 가축의 사육장소에 함께 있어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오염우려물품”이라 한다)과 잔존물을 포함한다]을 이동·해체·매몰, 화학적 처리 또는 소각하는 업무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생 략) 1.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나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가까워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 또는 해당 가축의 사육장소에 함께 있어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오염우려물품”이라 한다)을 격리·역류하거나 해당 가축사육시설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생 략) 1.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나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가까워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을 격리·역류하거나 해당 가축사육시설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이에 따라 개정안이 인용하는 “현행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오염우려물품 개념은 2027. 4. 1. 개정법률(법률 제21504호) 시행과 동시에 그 범위가 자동으로 축소됨.

그런데 개정안이 신설하려는 사용중지 등 조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발동하는

예방적 조치인데, 개정법률(법률 제21504호) 시행 이후에는 이미
살처분이 완료된 가축과 관련된 물품에 대해서만 명령이 가능
하게 되어 정작 확산을 막아야 할 초기·의심 단계에서는 명령의
근거 자체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개정법률(법률 제21504호) 시행 전에 오염우려물품 약
칭 조항의 위치 및 표현을 함께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오염 및 오염이 우려되는
사료 등에 대한 방역 조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힘.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
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²⁾

2)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
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
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
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
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
해와 실제, 2024, p.29).

현행	개정안
제7조(가축방역관) ①·② (생략)	제7조(가축방역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들어가 가축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가축질병의 예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試料)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다.	③ -----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도축장·집유장(集乳場) 등 작업장</u>	3. <u>도축장·집유장(集乳場)·사료제조시설 등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축산관계시설</u>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u><신설></u>	제23조의3(오염우려물품의 사용중지 등)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u>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3. 제14조제1항, 제22조제1항 본문·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자등에게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우려물품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채취한 사료 시료에 대해 국립가축방역기관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검사는 「사료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사료검사(인체 또는 동물등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 검사에 한정한다)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종류, 조치, 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벌칙) -----

-----.

1. 2. (현행과 같음)

3. -----

----- 제23조제1항·제2항, 제23조의3제1항-----

4. · 5. (생략)	4. · 5. (현행과 같음)
--------------	------------------

문의처
02)6788-5425

참고1

26년 ASF 발생 역학조사 중간결과

□ (현황) 올해 24건 발생, 기존 국내 발생 유전형(98%, IGR-II형)에 비해 해외 발생 유전형(IGR-I형) 주로 검출(24건 중 IGR-I형 21건, IGR-II형 3건)

□ (원인 추정) 유전자 분석 결과 및 역학적 특성 등을 토대로 유입 가능 위험요인 조사·분석결과, ①오염된 사료, ②발생농장간 차량 이동, ③불법 축산물 및 ④야생 멧돼지 오염원 유입으로 인한 발생 추정

① (오염된 사료) 돼지 유래 사료원료(혈장단백질 2건, 2.19)* 및 배합사료(2건, 2.24)**에서 ASF 유전자 검출(IGR-I형), 오염된 사료(원료) 생산·공급 경로 등을 고려시, ASF 바이러스에 오염된 사료 공급을 통한 유입 가능성

- IGR-I형 검출 농가는 ASF 유전자 검출 혈장단백질 함유 사료를 공급받거나, 해당 사료를 생산한 제조시설을 공유한 사료를 공급받음

* 또한, 돼지 혈액 수집 차량, 사료(원료) 운반차량, 도축장-사료(원료)제조시설-발생농장간 사료(원료) 제조·취급·운송과정에서 교차 오염으로 인한 오염원 확산 가능성도 있음

☞ (ASF 오염원의 사료원료 유입경로 추정) ① 발생농가('25.11.24 발생, 10.9일 민간기관 의뢰시료 ASF 양성)에서 감염추정기간('25.10.9~11.24) 동안 도축장에 돼지 출하 → ② 도축장에서 해당 돼지 혈액을 사료원료 제조업체에서 수집 → ③ 사료원료용 혈장단백질 생산 → ④ 사료제조업체에 공급 → ⑤ 농장에서 사료 급여

※ 금년 발생 13건(56~70차, 포천58차·63차(IGR-II)제외)의 ASF 유전자 전체 분석 결과, 작년 11월 당진55차 발생(IGR-I)과 상동성 99.99% 일치

② (발생 농장간 역학) 일부 발생농장(9호) 간 가축·차량 이동 확인

③ (불법 축산물) 발생농장은 외국인 근로자(IGR-I 유전형 발생국) 다수 고용, 본국에서 반입된 불법 축산물 공유 등으로 인한 오염원 유입 가능

* 미신고 축산물(6품목) ASF 유전자 검출(3건, '26.2.11), 발생농장 근로자 의복 등 ASF 유전자 검출(2호)

④ (야생 멧돼지) 포천·연천 발생(3건)은 IGR-II 검출(기존 국내 야생멧돼지 유전형)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